

# 우선주 퇴출기준 시행 안내

## 1. 개요

- 우선주 퇴출기준이 '13.7.1일부터 시행\*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안내 및 적극적인 대응조치 마련 필요

\* 우선주 포함 종류주식의 별도 진입·퇴출 제도는 '12.4.18일 마련되었으나, 충분한 안내기간 확보를 위해 우선주에 대한 퇴출기준은 '13.7.1일부터 시행

### < 우선주 퇴출 기준 >

- 보통주와 별도로 해당 우선주 종목별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가 다음의 기준으로 진행(기준별로 조치 시점은 상이)

관리종목지정	상장폐지
① 보통주 관리종목지정 - 보통주 관리종목 지정시	① 보통주 상장폐지 - 보통주 상장폐지시
② 반기 상장주식수 2만5천주 미만 <sup>주1)</sup> - '14.1월부터 최초 발생	② 상장주식수 2만 5천주 미만 <sup>주1)</sup> (2반기 연속) - '14.7월부터 최초 발생
③ 반기 월평균거래량 5천주 미만 <sup>주1)</sup> - '14.1월부터 최초 발생	③ 월평균거래량 5천주 미만 <sup>주1)</sup> (2반기 연속) - '14.7월부터 최초 발생
④ 30일간 시가총액 5억원 미달 - '13.8월부터 최초 발생	④ 시가총액 미달 후 일정요건 <sup>주2)</sup> 미충족 - '13.12월부터 최초 발생
⑤ 사업보고서상 주주수 100명 미만 - '14년 이후 결산월별 단계적 적용('13.7.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) * 12월 결산법인은 관리종목은 '15.3월, 상장폐지는 '16.3월부터 있을 예정	⑤ 주주수 100명 미만 (2년 연속)

주1)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관련 퇴출기준은 첫 해에 50%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된 것으로, '14.7.1일부터는 상장주식수 5만주, 거래량 1만주로 상향되어 정상적으로 적용

주2) 90일간 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 10일이상 계속되고, 5억원 이상 일수가 30일 이상

주3) 그 밖에 우선주가 양도제한을 받거나,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